

사이버포래상담실¹⁾

수탁사업 및 기관 사이버포래상담실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이버포래상담실은,

십대/여성/인터넷의 성매매 피해지원을 비롯한 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사이버포래상담실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 현황

기관명	사이버포래상담실				
기관주소	(157-010) 서울시 강서구 [REDACTED]				
대표자명	조진경	전 화	02) 6348-1318 02) [REDACTED]	전 송	02)2690-1255

2. 설립 목적

-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향상에 기여
-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 청소년/인터넷성매매 관련 이슈생산 및 연대활동
- 아동청소년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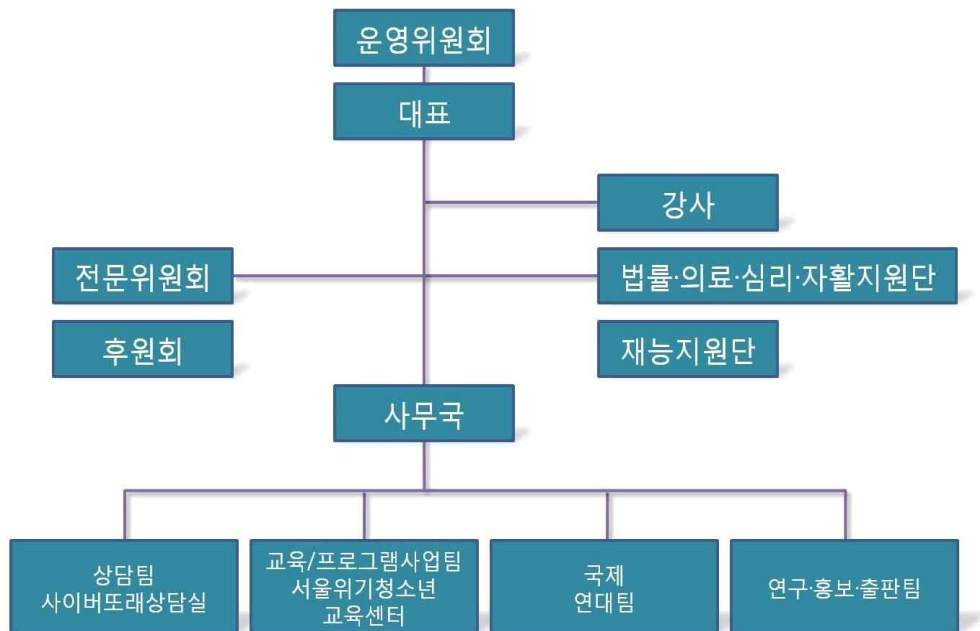
3. 기관현황

(1) 인적 현황

구분	계	대표	사무국장	상담	교육
계	8	1	1	4	2

1) 2014년부터 본 기관의 공식명칭은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변경됩니다.

(2) 조직도



(3) 운영위원

김동심	명지대 대학원 표현예술치료학과 표현예술치료사
김선옥	새날을 여는 청소년 센터 관장/청소년성매매 관련 전문가
박숙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국선전담 변호사
양지용	(주)인디엔피 대표 /인터넷 웹 개발 전문가
장민혜	(주)인디엔피 경영기획실장/홍보 관련 전문가
조진경	본 기관 대표

감사: 안수경 희년의 집 관장

4. MOU 체결 기관

-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 서울 가정법원

[붙임]

1. 사이버포래상담실
2.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이버포래상담실

1. 사업 배경

가출청소년이 한 해 20만명에 달하고 그 중 여자청소년 7~10명 중 1명 꼴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 경로는 90% 이상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이버공간에서는 365일 24시간 쉼 새 없이 성매매를 위한 거래와 조건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은 어떠한 제재도 없이 청소년들의 성을 이용하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며 인터넷 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상담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사이버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성매매피해 조기예방, 성구매자와 알선·조장세력에 대한 경고, 신고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이 성매매 조기 개입과 예방은 물론 성구매자와 알선·조장세력에 대한 경고와 처벌에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이버포래상담원의 양성은 물론 그들의 전문성을 고양시켜 인터넷성매매를 방지하는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건강한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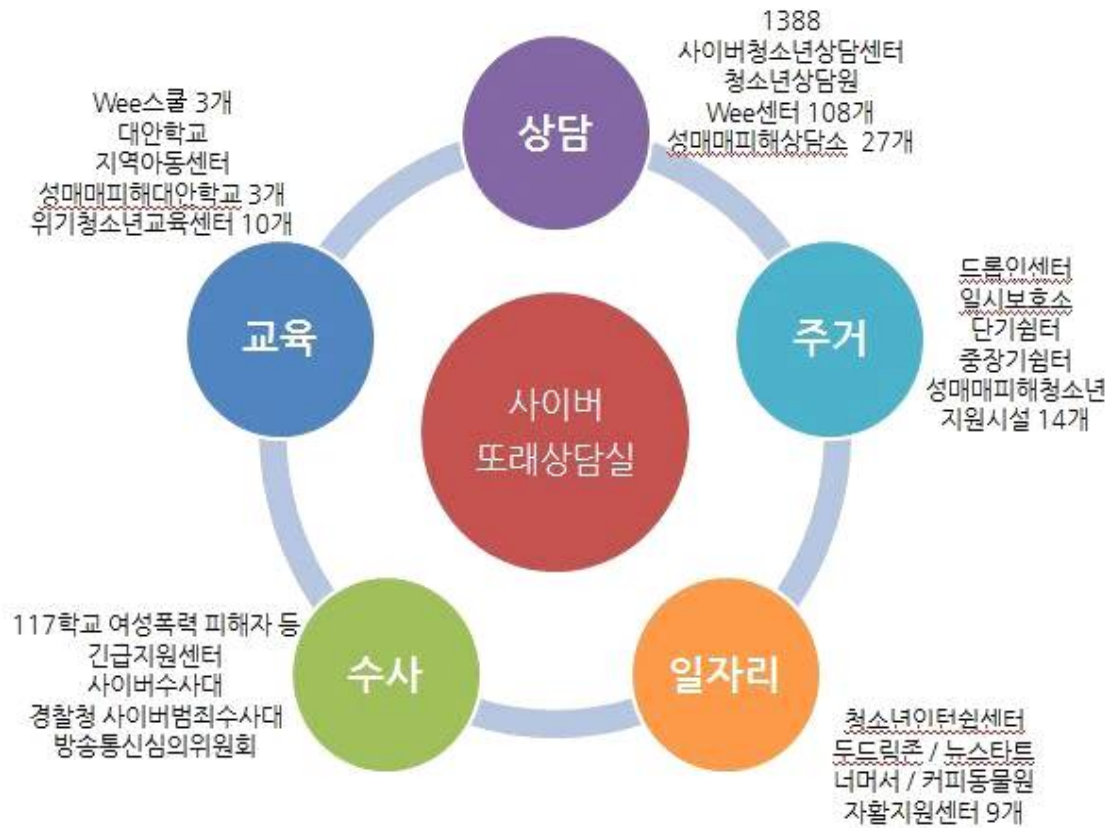
2. 사업 목적

- 1) 청소년/인터넷 성매매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조기개입
- 2) 포래상담원의 지속적인 양성과 역량강화
- 3) 청소년/인터넷 성매매피해 지원네트워크 구축
- 4) 성매매알선·구매자경계와 신고
- 5) 온오프라인의 활발한 홍보활동
- 6) 청소년/성매매 관련이슈 생산

3. 활동방법

- ▶ 사이버포래상담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채팅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카페 등에 직접 접속해, 성매매피해 정황이 보이는 여성, 청소년에게 먼저 말을 거는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 내담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기관연계(쉼터, 1388,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교육연계(위기 교육센터), 일자리제공, 법률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정서적지원, 긴급구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매매 조기유입 예방, 탈성매매, 인권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 대외추진체계



5. 사업내용

1	상담&모니터링사업	• 온라인 채팅 상담 및 모니터링 • 어플리케이션 상담 및 모니터링 • 카카오톡 상담 및 전화상담
2	통합지원서비스사업	• 교육지원: 전국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 • 주거지원: 드롭인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그룹홈 • 의료지원: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 • 학업지원: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 일자리지원: 인턴쉽센터, 자활지원센터 등 • 법률지원: 117학교·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수사대 등
3	교육사업	• 상담원 양성교육 및 인턴쉽 • 상담원 지속교육 (월 1회 내부토론 진행) • 성매매예방교육 및 활동가 교육 • 상담원 글로벌 리더십 개발교육
4	홍보사업	• 위기청소년을 위한 웹전단, 배너제작 및 배포 • 미니홈피 운영 • 오프라인 아웃리치: 거리 청소년 및 청소년이용업소대상 • 토론회개최: 청소년/성매매 관련이슈
5	네트워크사업	• 유관기관 방문 • 사안별 연대활동 • 국제연대
6	신고활동	• 성구매자,알선업자,알선사이트 신고활동 • 사이버수사대와 업무협약

6. 사업의 효과성

- 1) 적극적인 내담자발굴과 사례개입으로, 위기집대여성들을 위한 핫라인 역할 담당
- 2) 현재 지원체계 내 공백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인터넷성매매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
- 3) 어플리케이션 접근과 모니터링 시행을 통한 최근 성매매 유형을 포착
- 4) 성매매/청소년, 수사기관 등을 막론한 산발적 네트워크의 유기적 활용 강화
- 5) 사이버포래상담원의 건강한 일자리 생성과 자립기반 강화
- 6) 사이버상 만연한 성구매자들에게 경각심 제공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2), 시행령 제3조, 제4조3)

○ 사업대상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이 통보'된 청소년
- 청소년 성매매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청소년
-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

○ 청소년성장캠프 홈페이지 : www.jump1318.com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년부송치)

- ① 검사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 ① 검사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 ② 교육과정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비 전	
○ 성매매피해 또는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의미화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한다.	
목 적	
○ 성매매피해 또는 위기청소년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한다. ○ 청소년들이 인적·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스스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목표	단기목표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 및 일상생활의 안정화를 돕는다. ○ 안정적인 거주지 지원, 학력취득 및 취업준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한다.	○ 심리(성격)검사 및 1:1 개별상담, 진로탐색, 개인브랜드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 능동적인 체험학습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과 행동 강화, 사회적 관계형성 및 친화력을 제고한다. ○ 성교육 및 섹슈얼리티 강의, 성매매 바로알기 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성주체성을 향상시킨다.

3. 사업내용

사업내용	○ 40시간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성장캠프’ 운영 - 심리진단, 자아존중감, 사회통합, 성주체성, 탈성매매, 치유 및 치료 프로그램, 관계형성(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 사전사후지원 - 가족에 대한 개입 : 가정 복귀 시 가족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개입 - 심리·정서적 지원 : 다양한 폭력피해경험으로 인한 문제 개입 - 법률지원 및 재판동행 - 자립지원 : 두드림존 및 자활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컴퓨터 이용자 프로그램 연계, 지적능력이 취약한 경우,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훈련 지원 - 진학 및 진로지도 : 학교부적응 상담 및 검정고시 지원 등 - 멘토지원 : 청소년동반자 연계 - 기타 : 보호관찰 및 보호처분 대상자 지원, 교육이수자 대상 사후지지도임, 대상 청소년에 대한 각종 경조사 선물 지원

4.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성장캠프’

- 프로그램 내용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 야	프로그램	시간
심리상담	다면적 인성검사(3)	3시간
치료 및 치유	무용동작치료(3), 건강검진(3), 미술치료(3)	6시간
자아존중감 향상	영화감상(2), 미래설계 및 글쓰기(2)	3시간
사회통합	진로/직업체험(3), 경제교육(3), 인권교육(3)	9시간
성주체성 향상	섹슈얼리티(3), 성교육(3)	6시간
탈성매매	성매매바로알기(3), 탈성매매여성과의 만남(2)	5시간
관계형성	레크레이션 및 공동체 활동(12)	6시간
기타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3)	2시간

- 예시: 2013년 3차 ‘청소년성장캠프’ 프로그램 일정표 (2013.10.09 ~10.14, 5박 6일간 진행)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08:30~09:00		기상 및 아침*					
09:00~09:30							
09:30~10:00		하루일정 소개 및 교육장 이동					
10:00~10:30		섹슈얼리티 +성교육	성매매 바로알기	빼딱녀의 수다	경제교육	수료식 및 종파티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2:30							
12:30~13:00							
13: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해산
13:30~14:00							
14:00~14:30							
14:30~15:00	집결	푸드테라피	진로직업 체험	건강검진 (한의원)	MMPI (2) 미술치료(2)		
15:00~15:30	악세사리만들기						
15:30~16:00							
16:00~16:30						오리엔테이션(1) & 사전설문진행	
16:30~17:00							
17:00~17:30							
17:30~18:00	저녁식사						
18:00~18:30							
18:30~19:00							
19:00~19:30	MMPI(1)	미술치료 (1)	여가활동 (1)	여가활동 (2)	미래설계& 글쓰기		
19:30~20:00							
20:00~20:30							
20:30~21:00							
21:00~21:30	오리엔테이션 (2)	평가 및 마무리					
21:30~22:00							